FOCUS

녹색성장기본법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 연구위원

1. 서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금년 1월 13일부로 제정되어 4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그림 1 참조). 동법시행령은 4월 13일에 제정 공표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적인 기반은 준비된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규제와 성장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는 기술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건설산업 자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량 때문이다. 물론 상품군별로 차이는 있다. 대중 교통수단이 도로보다는 철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0년 국토부의 국정보고에도 2020년경에는 도로보다 철도분야의 투자비가 역전되는 것으로 계획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국가전체 에너지의 25%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이 부문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기존 건축물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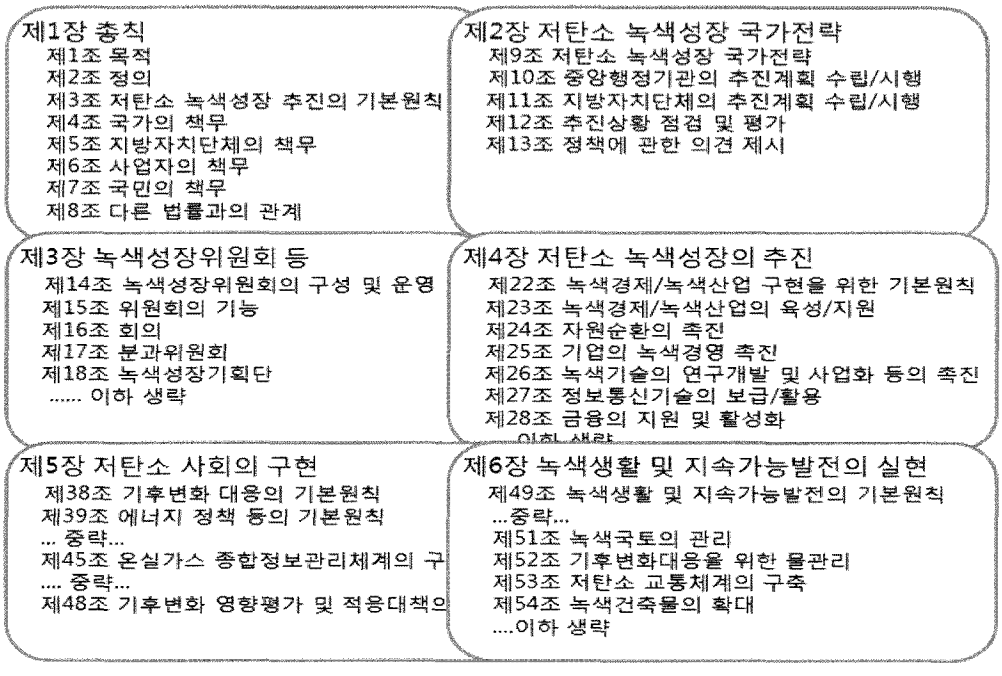

그림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구성

배출을 억제시키는 새로운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저감을 위한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리라는 예상도 쉽게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문별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관련 조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본 법 제24조는 자원순환의 촉진을 통해 폐기물 발생의 억제와 재활용 자재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업과 기술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있지만 건설생산과정에 있어서는 친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전통적인 토목과 건축분야의 건설현장은 앞으로 공사 수행과정에서의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기술과 방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하겠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는 녹색도로 인증시스템의 경우 인증 항목의 과반이상이 시공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제51조녹색국토의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녹색인프라의 주요 대상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탄소중립도시, 2)해양의 친환경적 개발과 보존, 3) 녹색 항만, 4) 친환경 교통체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54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라는 조항을 통해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원칙과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은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제43조녹색건축물의확대등을 통하여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건축시설물은 토목시설과 같이 시공과정에서의 친환경성도 중요하겠지만, 설계과정에서의 각종 친환경적 기술과 요소의 도입이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신축에는 설계 및 공사기준에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등에 대한 총량기준이 적용되어 현재와 같은 전통식 방식으로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수록 탄소배출량이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싼 값에 입주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엄청나게 늘어나 결과적으로 부담액이 증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입주자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과 함께 탄소세에 해당되는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싼 쪽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의 실제적 실행을 위해서는 녹색국토의 시설을 담당하는(주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됨) 개별 발주기관의 녹색 시설 기준의 마련과 이를 인증하는 민간 혹은 공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주로 녹색 건축물 중심이었던 관련 기준과 인증체계가 녹색도로, 항만, 공항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기준과 인증체계는 이미 도입되었거나 시범적용 중에 있다.

공공발주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통해 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와 그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정책이 더 실질적이고 실제 시장과 산업을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녹색 제도와 실제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받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은 적어도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USGBC의 LEED Silver 이상의 친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산타모니카시의 경우 주 정부보다 더 강력한 녹색건설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점을 감안 했을 때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국가상위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지자체 특성에 맞는 개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정 지자체는 정부의 권고보다 더 강력하게 녹색정책과 유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이러한 활동은 건설기업의 관련 사업 투자 및 유치활동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자체의 경우 개별 시설물보다는 지역, 블록 등을 패키지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매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래의 설계와 시공의 생산역할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자재 등 연관 업계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를 인수하거나 제휴하여 선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녹색성장기본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조항과도 부합된다. 미국에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재활용 산업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재활용 자재 산업의 성장은 녹색 시설물에서

재활용 자재 활용률을 70% 이상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친환경 건축물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재 재활용의 경우 연관 산업이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이를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은 건설산업에서도 새로운 업역 혹은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이미 친환경 건축 인증과 관련된 용역업 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 유형의 전문영역이 생길 것이다. 관련된 전문영역이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반대가 없다. 하지만, 국내 건설시장에서 턴키제도나 BTL 사업 등에서 보았듯이 실제보다는 페이퍼 중심으로 대행해주는 기관의 난립은 막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환경은 오히려 해당 영역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 업체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페이퍼 녹색건설산업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결론

바람직한 녹색건설산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집단의 보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녹색건설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미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많다. 논의되고 있는 녹색건설의 상당수는 기존의 건설활동에서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녹색성장은 그동안 건설산업이 간과하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을 재조명하고 있다. 여기에 첨단 기술(친환경기술, 정보화기술 등)을 포함시켜 궁극적으로 건설시설물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은 시간의 문제이지 선택 여부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세간의 유행어처럼 건설산업에서도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즐긴다면 신성장의 길도 함께 열릴 것이라 믿는다.

· 최석인 e-mail : sichoi@cerik.re.kr